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23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김정호 · 윤후덕 · 이연희
이성윤 · 전진숙 · 박 정
이수진 · 박해철 허종식
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이용 행태를 반영하고,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행위에 대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대여된 장비가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제13조의3 및 제55조의2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의2 중 “25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자전거등의”를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자전거등”을 각각 “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전거등의”를 “자전거의”로, “자전거등에서”를 “자전거에서”로, “자전거등을”을 “자전거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의 특례)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보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 중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사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 및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2조제19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u>25킬로미터</u>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의2. ----- ----- ----- <u>20킬로미터</u> ----- ----- ----- ----- -----.
20. ~ 35. (생략)	20. ~ 35.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u>자전거</u>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u>자전거</u>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u>자전거</u> 통행방법의 특례) ① <u>자전거</u> ----- ----- ----- ----- ----- ----- -----.
② <u>자전거</u>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② <u>자전거</u> ----- ----- -----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 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

-----.

③ 자전거-----

-----자전거

-----.

-----자전거-----

-----.

④ 자전거-----

-----.

-----자전거-----

-----.

1. ~ 3. (현행과 같음)

⑤ 자전거-----

-----.

⑥ 자전거의-----

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자전거에서-----
--자전거를-----
-----.

제1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방법의 특례) ① 개인형 이동 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 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
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
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나란히 보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

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 ----- 사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 및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람----- ----- -----. ② (현행과 같음)
--	---